

이 사 회 운 영 규 정

조광페인트 주식회사

이사회운영 규정

제1장 총칙

1.1 책임과 권한

1.1.1 이사회는 법령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1.1.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성과 소집

2.1 구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써 구성한다.

2.2 소집권자

2.2.1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2.2.2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이 때 각 이사는 제2.2.1항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3 소집절차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3.1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결의한다.

3.1.1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회사가 필요를 인정한 사항

3.1.2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절차의 제정 및 개정

3.1.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이에 대한 평가 보고

3.1.4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3.2 회의의 종류

- 3.2.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3.2.2 정기이사회는 매년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최일시는 의장이 별도 통보한다.
- 3.2.3 전항의 개최주기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3.2.4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3.3 의결방법

- 3.3.1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수로 한다.
- 3.3.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3.3.3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4 위임

- 3.4.1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회 의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3.4.2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3.4.3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3.4.4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담당자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3.5 사후 승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

3.6 간사 및 의사록

- 3.6.1 이사회 운영상 필요한 간사는 이사회주관임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 3.6.2 이사회에는 간사가 출석할 수 있다.
- 3.6.3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3.6.4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7 사후관리

3.7.1 간사는 이사회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출석이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3.7.2 간사는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결과 및 이사회 특별지시사항을 각 안건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진현황 및 조치 결과를 종합하여 차기 이사회 또는 필요 시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